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무사 제도

<2026 년도판>

도 교 세 무 사 회

목 차

머리말	1
1. 세무 행정의 구조	2-4
(1) 국세 기구	
(2) 지방세 기구	
(3) 조세법률주의	
(4) 신고 납세 제도	
(5) 세무 조사와 구제 제도	
2. 일본의 세무사 제도	4-5
(1) 세무사의 업무	
(2) 세무·회계 전문가 '세무사'	
(3) 세무사회	
3. 일본의 주요 세금	6
4.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6-12
(1)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2)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3) 원천소득세	
5. 증여 및 상속에 부과되는 세금	12-14
(1) 납세의무자의 판정	
(2) 증여세	
(3) 상속세	
6.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15
(1) 자동차증량세·자동차세·경자동차세	
(2)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3) 사업소세	
7.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15-16
(1) 소비세	
(2) 담배세·도부현담배세·시정촌담배세	
(3) 주세	
(4) 골프장이용세	

8.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16

(1) 인지세

(2) 등록면허세

(3) 부동산취득세

머리말

일본의 세제와 세무 행정을 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행정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 점이 있어도 사후적인 구제로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이 주류였습니다. 1942년에 세무대리사법이 제정되어 납세자의 세무 대리를 직업으로 하는 공적 자격 제도가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세무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후 민주화의 물결과 더불어 그때까지의 부과 과세 제도를 대신하여 1947년에는 자신의 소득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세한다는 신고 납세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1949년에는 미국의 샤우프 세제 시찰단이 일본의 세제를 조사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목표로 한 세제의 포괄적 개혁안인 '샤우프 권고'를 제언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의 간접세 중심의 세제에서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 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신고 납세 제도의 강화를 제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언을 받아들여 1951년에는 기존의 세무대리사법을 대신하여 현재의 세무사법이 제정되었고, 세무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 납세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세제도 이 '샤우프 권고'의 이념을 기본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그 보완으로서의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팸플릿은 외국인을 위해 일본의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대리인이자 일본 세무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해서도 그 제도의 개요를 쉽게 서술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세제는 각국 간 조세 조약의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데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전 가격 세제, 과소 자본 세제, 외국 자회사 합산 세제(CFC 세제)와 같은 제도도 관련되므로 복잡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 없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세무사회

1. 세무 행정의 구조

일본의 세무 행정은 과세권의 소재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 기구로 구분됩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가 각각 여러 세목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기구

국세의 행정 기구는 재무성의 외국인 국세청 산하에 전국 11 개(삿포로·센다이·간토신에쓰·도쿄·가나자와·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다카마쓰·후쿠오카·구마모토)의 국세국과 오키나와 국세사무소 및 524 개의 세무서가 있으며, 이들이 창구가 되어 세무 행정 사무를 수행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내국세의 신고·납세 창구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2) 지방세 기구

지방세 세무를 총괄하는 곳은 총무성의 자치 세무국으로,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등 지방세의 기획 입안, 과세권의 귀속 결정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창구 및 부과 징수 사무는 과세권을 가진 각 지방 공공 단체가 수행합니다. 도도부현은 각 도도부현 세무사무소가, 시구정촌은 시청·구청·정촌사무소의 세무과가 창구가 됩니다.

(3) 조세법률주의

일본국 헌법은 제 30 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및 제 84 조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가 공공 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이 가진 부의 일부를 국가의 손으로 이전하는 것이기에 그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신고 납세 제도

①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

조세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으로는 '신고 납세 방식' 및 '부과 과세 방식' 외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세의 신고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의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 등 대부분의 주요 조세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부과 과세 방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세무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세의 부가세 및 지방세의 고정자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밖에 원천소득세나 인지세 등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조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세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 원칙을 정한 일본국 헌법의 이념을 세제 측면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납세 신고 및 경정 청구

납세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한 내 신고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서라고 합니다.

2) 기한 후 신고서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제출기한 후라도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신고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경정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신고 등에 따른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그 신고 등에 대해 세무서장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경정 청구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기한부터 5 년 이내에 한해 세무서장에게 그 세액의 경정을 요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청색 신고 제도

청색 신고 제도란 일정한 장부 서류를 갖춘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청색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 납세 제도의 보급 및 장부 기장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④ 전자 신고

국세의 신고·납세·신청 등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 신고(e-Ta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조사와 구제 제도

① 세무 조사 및 경정·결정

신고 납세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그 신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에 근거하여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사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조사 결과 그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이 이루어집니다.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벌칙으로서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불복 신청 제도 및 소송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조사 청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세불복심판소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재조사 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의 세무사 제도

법인 및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특정 급여소득자 등은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세무사의 업무(법 제 2 조의 2)

세무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 납세 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고,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세무사 업무

- 1) 세무 대리(세무 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이나 세무 관공서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주장 또는 진술을 대리·대행하는 것)
- 2) 세무 서류(각종 신고서, 신청서, 불복신청서 등)의 작성
- 3) 세무 상담

② 부수 업무

세무사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재무 서류의 작성, 회계 장부 기장의 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

③ 세무 소송의 보좌인 업무

세무 소송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좌인으로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출정 진술)하는 업무

④ 주식회사의 회계 참여 업무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 참여로서 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 서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⑤ 사회 공헌

세무사의 지식과 경험을 살린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 '세무사 기념일'이나 '세금을 생각하는 주간' 등에서의 무료 세무 상담 실시
- 법원의 민사·가사 조정 제도, 성년 후견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
- 조세 교육을 위한 활동

⑥ 지방 공공 단체의 외부 감사

외부 감사인으로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참여

(2) 세무·회계 전문가 '세무사'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민간의 세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나 동등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 부여됩니다. 현재 전국에 약 8 만 2 천 명의 세무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의뢰에 따라 세무 서류 작성·세무 조사 입회·세무 상담·회계 장부 기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세무사회(법 제 18 조, 제 49 조)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회에 등록하고 입회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전국에 15 개가 있으며, 그 연합 조직으로서 일본 세무사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도쿄에는 도쿄 세무사회가 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서 각 지부 조직이 있습니다. 지부의 지역은 각 세무서와 동일한 관할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부 및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3. 일본의 주요 세금

	국세	지방세	
		도부현세	시정촌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도부현민세 사업세	시정촌민세
증여 및 상속에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상속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증량세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소비세 담배세 주세	지방소비세 도부현담배세 골프장이용세	시정촌담배세 입탕세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4.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1)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일본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사업세'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

가) 소득이란 그 해의 수입 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급여, 퇴직, 산림, 양도, 일시, 기타의 10 종류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완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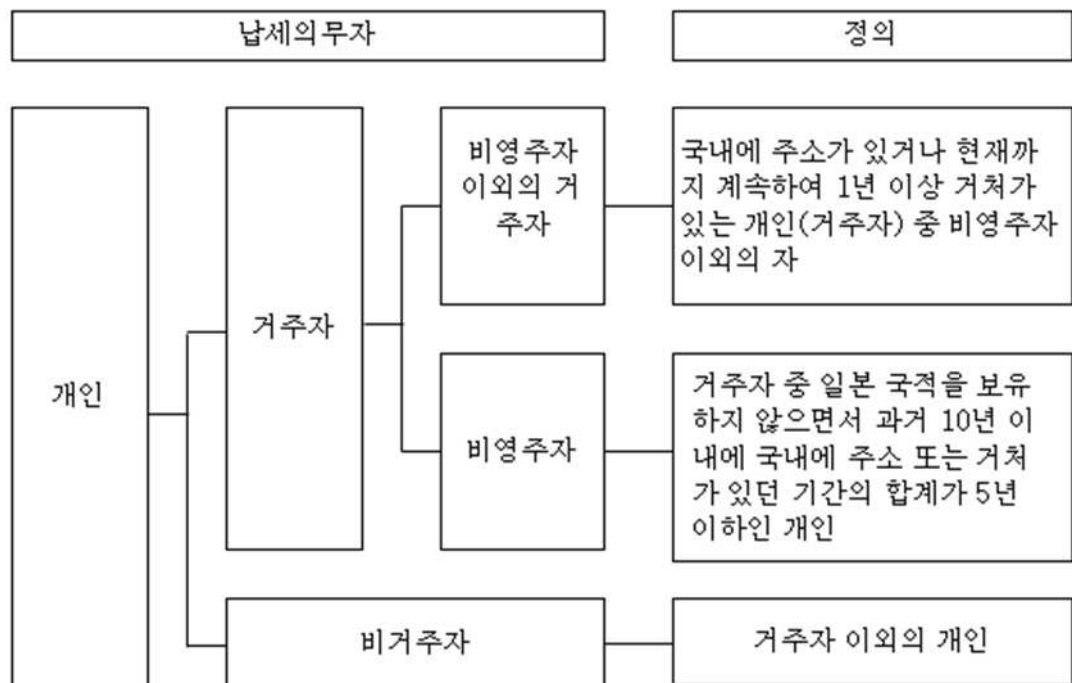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급여소득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의 연간 수입 합계액이 2,000 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
- 한 곳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 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부수적인 급여 등의 금액과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 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

신고기한: 다음 해 2 월 16 일부터 3 월 15 일까지

(납세관리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도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나) 개인은 각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게 된 사람이 국내에 계속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다) 과세소득 범위

소득 구분 거주 구분		국외원천소득 이외의 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국내 지급	국내 송금	국외 지급
거주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과세			
	비영주자	과세			
비거주자		과세			

라) 과세 방식

거주 구분 등			과세 방식
거주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종합과세(신고 납세 방식)
	비영주자		
비거주자	PE를 보유 한 자	PE 귀속 소득	
		PE 귀속 소득 이외	
	PE를 보유하지 않은 자		

- PE(항구적 시설)란 지점 등, 건설 작업장, 대리인 등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잡손공제·기부금공제·기초공제만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배당공제·외국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마) 소득세 세율

과세소득 구분		세율
—	195 만 엔 이하	5 %
195 만 엔 초과	330 만 엔 이하	10%
330 만 엔 초과	695 만 엔 이하	20%
695 만 엔 초과	900 만 엔 이하	23%
900 만 엔 초과	1,800 만 엔 이하	33%
1,800 만 엔 초과	4,000 만 엔 이하	40%
4,000 만 엔 초과	—	45%

다만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37 년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흥특별소득세가 소득세액의 2.1% 부가됩니다.

② 주민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를 아울러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1 월 1 일 현재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주소가 없더라도 사무소나 가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균등할만 과세됩니다. 주민세의 세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소득할의 세율은 일률 10%, 균등할은 연 정액 4,000 엔입니다.

(2)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일본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국세로서의 '법인세'와 지방세로서의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가 있습니다.

① 법인세

가)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됩니다. 내국법인이란 일본 국내에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입니다. 외국 기업에 의해 일본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 관련 회사 등은 내국법인이지만, 외국 기업의 지점이나 공장, 기타 항구적 시설은 외국법인입니다.

나) 납세의무자 종류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을 불문하고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은 '특정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 과세소득 범위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특정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라) 사업연도

사업연도란 손익의 계산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

마) 세율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2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본금 1 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 800 만 엔 이하의 소득 금액에 19%(2012 년 4 월 1 일부터 2027 년 3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시작하는 각 사업연도분의 연 800 만 엔 이하 소득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5%로 경감)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세액에 대해 10.3%가 부과되는 지방법인세도 있습니다. 아울러 2026 년 4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방위특별법인세가 창설되어, 법인세액(기준 법인세액에서 연 500 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4%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들은 법인의 세금 신고 시 함께 계산·신고됩니다.

바) 확정 신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신고기한을 1 개월 연장(결산일로부터 3 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사) 납세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본점 등의 소재지입니다.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과 관련된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른바 항구적 시설)의 소재지입니다.

아) 그룹 통산 제도

모법인 및 모법인에 의한 완전지배 관계에 있는 자법인으로 구성된 기업 그룹 내 각 법인을 납세 단위로 하여,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법인세액의 계산 및 신고를 하고, 그룹 내에서 손익 통산 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조직 재편 세제

법인이 합병, 분할, 현물출자, 현물분배, 주식교환, 주식분배 등의 조직 재편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전 자산 등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이연되는 특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 그룹 법인 세제

100% 자본 관계에 있는 기업 그룹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2010 년 10 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에서의 토지나 유가증권 등 일정 자산의 이동은 그룹 외로 이전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카) 이전 가격 세제

법인이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는 대가의 금액이 독립기업 간 가격에 미치지 않거나 지급하는 대가의 금액이 독립기업 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외 관련 거래는 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 과소 자본 세제

외국 모회사 등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평균 잔액이 그 일본 자회사에 대한 자본 지분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해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부채 이자 중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파) 과다 지급 이자 세제

소득 금액에 비해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입니다.

하) 외국 자회사 합산 세제(CFC 세제)

외국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을 일본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② 법인주민세

법인주민세란 국내에 사무소,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 등에 부과되는 도부현민세 또는 시정촌민세로, 법인세율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③ 법인사업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부과되는 도부현세로,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할 외에 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 금액 등 외형적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할과 자본할이 있습니다.

(3) 원천소득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일정 지급 시 지급자는 그 지급액에서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범위와 세율은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에 대해 원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급여, 퇴직수당, 보수·요금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관계의 개요】

외국법인 구분 소득 종류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법인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원천 징수
			항구적 시설 귀속 소득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		
국 내 원 천 소 득	(사업소득)		(1)항구적 시설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 외】	없음	
	(2)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보유 (아래 (7)~(14)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법인세】	없음	
	(3)국내 에 있는 자산의 양도(오 른쪽의 것에 한함)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			없음 (주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등의 양도				
		국내에 있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				
		매집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사업 양도 유사 주식의 양도				
		부동산 관련 법인 주식의 양도				
		국내 골프장의 소유·경영과 관련된 법인 주식의 양도 등				
	(4)인적 역무 제공 사업의 대가				20.42%	
	(5)국내 부동산의 임대료 등			20.42%		
	(6)그 밖의 국내원천소득			없음		
(7)채권 이자 등		【원천징수만】	15.315 %			
(8)배당 등			20.42%			

(9)대부금 이자		20.42%
(10)사용료 등		20.42%
(11)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20.42%
(12)생명보험 계약에 근거한 연금 등		20.42%
(13)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 등		15.315 %
(14)의명조합 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의 분배금		20.42%
국내원천소득 이외의 소득	【과세 대상 외】	없음

- 토지의 양도 대가에 대해서는 10.21%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7)부터 (14)까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소득세법상의 것이며,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구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 년 4 월 1 일 현재 일본은 157 개국·지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과의 조세 조약 적용에 따라 그 세율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적용을 받으려면 지급을 받는 자가 지급을 하는 자를 경유하여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증여 및 상속에 부과되는 세금

(1) 납세의무자의 판정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개인의 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재산을 취득한 개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 취득 시의 주소, 일본 국적의 유무 등에 따라 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거주 제한 납세의무자 또는 비거주 제한 납세의무자로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 재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및 비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일본 국내외의 취득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거주 제한 납세의무자 및 비거주 제한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 재산 중 상속세법의 시행지(일본 국내)에 있는 것만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수증자 피상속인·증여자		일본 국내에 주소					
		있음			없음		
		일시 거주자			일본 국적		
					있음	없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주소 있음	주소 없음	
일본 국내에 주소	있음	외국인 피상속인 외국인 증여자			거주 제한 납세의무자		
	없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주소 있음	일본 국적 있음	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 제한 납세의무자
		주소 있음	일본 국적 없음	있음			
		주소 없음	비거주 피상속인	증여자			

- 일시 거주자는 상속·증여 시 재류 자격(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 1 의 위쪽 난에 기재된 재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상속 개시 전 15 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던 기간의 합계가 10 년 이하인 자
- 외국인 피상속인·외국인 증여자는 상속·증여 시 재류 자격(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 1 의 위쪽 난에 기재된 재류 자격)을 보유하면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던 자
- 비거주 피상속인·비거주 증여자는 상속·증여 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던 자로서, 해당 상속 개시 전 10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던 적이 있는 자 중 그 어느 시점에도 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 또는 해당 상속 개시 전 10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도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던 적이 없는 자

(2) 증여세

증여에 의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는 납세지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2 월 1 일부터 3 월 15 일까지입니다.

재산의 증여를 받았을 때 일정한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는 '상속 시 정산 과세'라는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오른쪽 이외의 증여		20 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로부터의 증여	
과세 가액	세율(%)	과세 가액	세율(%)
200 만 엔 이하	10	200 만 엔 이하	10
300 만 엔 이하	15	400 만 엔 이하	15
400 만 엔 이하	20		
600 만 엔 이하	30	600 만 엔 이하	20
1,000 만 엔 이하	40	1,000 만 엔 이하	30
1,500 만 엔 이하	45	1,500 만 엔 이하	40
3,000 만 엔 이하	50	3,000 만 엔 이하	45
3,000 만 엔 초과	55	4,500 만 엔 이하	50
		4,500 만 엔 초과	55

과세 가액이란 기초공제(110 만 엔)나 배우자공제(2,000 만 엔)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3)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납세지의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일본 국내에 일정한 주소가 있고 상속인이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인에게 일본 국적이 없더라도 일본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상속인의 납세의무자 판정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세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 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 가액	세율(%)
1,000 만 엔 이하	10
3,000 만 엔 이하	15
5,000 만 엔 이하	20
1 억 엔 이하	30
2 억 엔 이하	40
3 억 엔 이하	45
6 억 엔 이하	50

6억 엔 초과	55
---------	----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은 3,000 만 엔+600 만 엔×법정 상속인 수입니다.

6.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1) 자동차증량세·자동차세·경자동차세

① 자동차증량세

자동차 검사 등을 할 때 자동차 증량 등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②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주된 주차장이 소재한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③ 경자동차세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이륜소형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주된 주차장이 소재한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① 고정자산세

토지나 가옥 및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 비품 등을 보유한 자(법인·개인)가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인 1.4%를 기준으로 각 시정촌이 조례로 정합니다.

②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법인·개인)가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토지 및 가옥 평가액의 0.3%(제한세율)입니다.

(3) 사업소세

정령지정도시 등 대도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개인)가 그 사업소의 바닥면적,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7.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1) 소비세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서 상품의 판매나 리스,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과세되며,

이러한 거래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수출품은 면세입니다.

과세사업자인 개인 및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거래 중 수령한 소비세와 지급한 소비세의 차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비세 세율은 표준세율 10%(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 식료품 등에 경감세율 8%(소비세 6.24%, 지방소비세 1.76%)가 적용됩니다.

(2) 담배세·담배특별세·지방담배세

담배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 주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4) 골프장이용세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도도부현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8.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1) 인지세

계약서·영수증 등 일정한 과세 문서에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2) 등록면허세

① 부동산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을 등기한 자(법인·개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② 상업등기

회사설립, 증자, 지점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등의 상업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허권·저작권 등의 등록이나 자격 등록 시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부동산취득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법인·개인)가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무사 제도
<2026 년도판>

2026 년 8 월 발행

편집 · 발행

도쿄 세무사회 국제부

우편번호 151-0051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10-6 도쿄 세무사
회관

TEL 03-3356-4461(대표) FAX 03-3356-4469